의 안 번 호	제48호
의결 연월일	2020. 5. 18.

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5월 08일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0년 5월 08일

다. 상 정 일 자 : 2020년 5월 18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세무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[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]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**소유 재산의 평가방법(안 제8조)**

- [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] 제도의 신청 자격이 되는 소유 재산 평가

○ **선정대리인 신청 · 통지 등(안 제9조)**

- [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] 제도의 안내, 신청방법, 결과통지 및 기록 · 관리

○ 선정대리인의 의무 · 우대 등(안 제10조)

- 선정대리인의 임기, 비밀유지 의무, 우대사항 규정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론 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